

■ 스웨덴 - 정보조사원(Datainspektionen)

바로가기 ⇒ <http://www.datainspektionen.se>

메일보내기 ⇒ datainspektionen@datainspektion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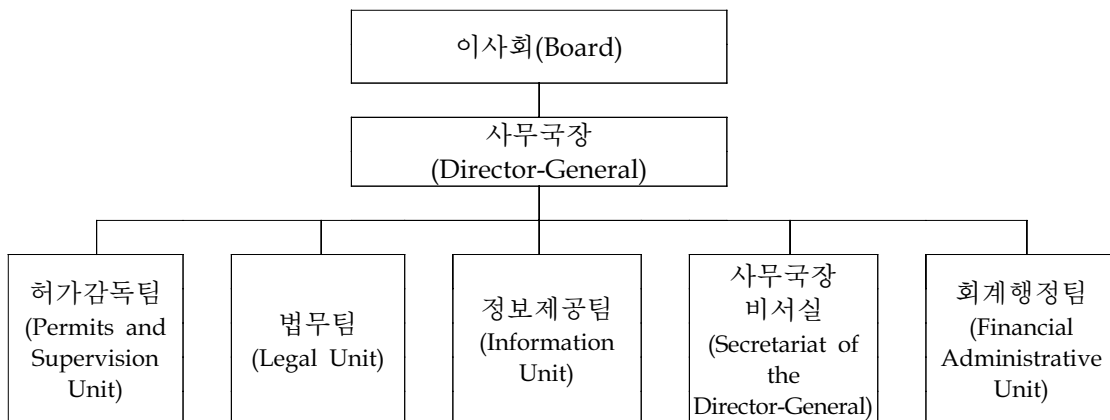


스웨덴은 1973년 데이터법(The Data Act of 1973)을 제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개인정보를 기록한 모든 자의 정보처리를 규율한 바 있다. 동법은 1998. 10. 24일 발효된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으로 대체되었다.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1974년 설립된 정보조사원(The Data Inspection Board)으로 이사회(Board)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보조사원의 설립 및 구성

정보조사원은 1973년 데이터법에 의거하여 1974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 사무국장 포함 총 9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하고 복잡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회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8인의 위원이 모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고도의 독립감독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무국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예·결산 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사무국장의 임명도 재무부 장관이 행한다. 직원의 인력은 약 40여명 정도이며, 대부분 법률가나 IT 전문가이다. 사무국은 허가감독팀, 법무팀, 홍보팀, 사무국장 비서실, 회계행정팀의 총 5개 부서로 나뉜다. 부서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보조사원 조직도>



<사무국의 주요업무>

부서	주요업무
허가감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법, 구정보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모든 정보처리 허가신청을 처리 - 사무국에 접수된 민원접수, 조사 및 감독 - 각종 법률에 대한 지침(Directive) 및 규약(Code of statutes) 제정
법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입법안의 개인정보침해가능성 여부 심사 및 의견 제공 - 각종 규제활동(regulatory activity) - 허가감독팀이 제정하는 지침이나 상담의 복잡한 법률문제 지원 - 국제협력업무 담당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언론, 시민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 및 사무국 활동, 관련법률 등에 대해 정보제공 및 홍보 - 사무국 웹사이트, 전화상담센터 운영 - 개인정보 관련 회의 개최 및 교육·강의 지원
사무국장 비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의 일반행정 및 인사업무 - 보안담당 - 등록부(registry) 등 공공기록(archives) 관리 - 사무국 데이터시스템 개발·운영 - 예산업무 및 연차보고서 작성
회계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내부회계업무 담당

2. 관장법률

스웨덴의 정보조사원은 1998년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Act, 1998)을 주로 관장한다. 또한 2001. 10월까지의 동법 제정 전에 행해진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1973년 정보법(The Data Act, 1973)이 적용되었는 바, 정보법도 관장하였다. 이러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는 두 법률 외 특히 신용정보와 관련하여서 채권추심법(The Debt Recovery Act, 1974)이나 신용정보법(The Credit Information Act, 1973)도 함께 관장하고 있다.

3. 업무범위

스웨덴의 정보조사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규율한다. 또한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일부분만 자동처리되는 경우도 포함) 및 특정기준에 따라 검색과 편집이 가능하도록 수집되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기타 신용정보보호의 역할도 하고 있다.

4. 주요기능

스웨덴의 정보조사원이 행하는 주요기능은 개인정보피해구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개인정보처리 등록·감독, 자동화된 정보처리에 관한 지침 등의 규칙 제정, 정부·의회·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 각종 개인정보보호 문제관련 조사·연구 등이 있다.

<정보조사원의 주요기능>

구분	세부내용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 대한 불만처리 및 사실조사 - 지방행정법원(County Administrative Court)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의 삭제 청구 -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명령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관련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감독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고받아 등록 - 침해행위시 벌금(default fine) 부과, 개인정보처리행위 금지
규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규칙 제정 : 개인정보처리가 허가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요건, 개인식별번호의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 등에 대한 규칙 제정
상담 및 입법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개인정보 상담 - 조사위원회(Commissions of inquiry)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공 - 정부 입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가능성 자문 및 권고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 개발과 프라이버시 문제 조사
자율규제활동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자율협약(Sector agreement)에 대하여 의견 제시(요청시)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등 교육실시 - 웹사이트, 간행물 등 제작·홍보
대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등 국제기구와 협력 -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